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21-12호
2021. 2. 5.(금)

차 례

고 시 (1)

-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개정 규약 고시(고시 제2021-10호) 1

공 고 (3)

- 공동주택 선거관리 전자투표 실시 지원계획 공고(공고 제2021-138호) 10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1-140호) 14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1-148호) 16

입법예고 (2)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제2021-134호) 19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141호) 45

공 람									
--------	--	--	--	--	--	--	--	--	--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개정 규약 고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및 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명 칭 :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2. 목 적
 -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규약 개정에 따라 고시 절차 이행
3. 주요 내용
 - 회원도시 확대 등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 재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 제154조(행정협의회의 규약)
 - 「지방자치법」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5. 문 의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공동체과 교육지원팀(042-608-6372)

붙임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1부. 끝.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2018. 3. 31. 제정
2020. 11. 17. 개정

제1조 [목적]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지방교육 협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
2. 지방교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방교육 협력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4조 [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복수

의 부회장과 사무총장 1명,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 11. 17.>

②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회장은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사무총장 및 감사를 선임한다. <개정 2020. 11. 17.>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이 된다. <개정 2020. 11. 17.>

⑥ 사무총장은 협의회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20. 11. 17.>

제5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충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7.>

제6조 [총회 및 의결] ①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총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⑥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 또는 국

· 과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 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실무협의회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사항을 검토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회원 도시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

성하며 운영은 협의회장 지자체가 주관한다. <개정 2020. 11. 17.>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결된 안건사항을 처리하거나,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20. 11. 17.>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전체 회원도시에게 공유하며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개정 2020. 11. 17.>

제12조 [경비부담] ① 협의회 공동사업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매년 따로 정하는 분기일까지 결정된 분담금을 협의회장 지자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

② 납부된 분담금은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1. 총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2. 포럼, 박람회 등 혁신교육 확산에 필요한 사업
3. 혁신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4. 협의회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사업
5.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그 외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 <개정 2020. 11. 17.>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경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1. 17.>

③감사 지자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 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보고한다. <개정 2020. 11. 17.>

제14조 [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총회에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를 거쳐 회장이 결정하고 협의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0. 11. 17.>

제16조 [가입 및 탈퇴] 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② 본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③ 본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 탈퇴 처리한다.

[별표 1]

회원도시현황(53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020.11월 현재

지 역	지 방 자 치 단 체 명	비 고
서 울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4
부 산	북구, 연제구, 금정구	3
인 천	미추홀구	1
광 주	서구	1
대 전	대덕구	1
울 산	중구	1
경 기	수원시, 고양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오산시, 구리시, 여주시	13
강 원	홍천군	1
충 북	보은군	1
충 남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3
전 남	여수시, 순천시, 곡성군, 구례군	4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가입신청서

아래와 같이 가입을 신청합니다.

구분	신청내용		
기관	자치단체명	시·도명	
현황	기관주소		
	단체장성명		
	교육담당부서	국	과(사업소)
	과장 ○○○	○○팀장 ○○○	담당 ○○○
	010-0000-000	010-0000-000	010-0000-000
	abcd@korea.kr	abcd@korea.kr	abcd@korea.kr
학교	총인구수	0,000,000명	
현황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00개	0,000명
	중학교	00개	0,000명
	고등학교	00개	0,000명
	계	000개	00,000명
		(기준일 :)	
재정	총예산규모	000,000백만원	
규모	교육경비보조금	000,000백만원	
		(기준일 :)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 귀하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위임장

1. 위임받는 자

성 명		연락처	
소 속		직급(직위)	

2. 위임하는 자

성 명		연락처	
소 속		직급(직위)	

3. 위임사유

--

본인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6조제6항에 의거 정기총회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자 △△시장(군수·구청장) ○○○ (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 귀하

공동주택 선거관리 전자투표 실시 지원계획 공고

우리 구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전자투표 서비스 소요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기 간 : 2021. 2. ~ 2021. 12.
2. 지원대상 및 기준 :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 단지별 연 1회 지원 (여건 고려 변경가능)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승강기, 중앙집중·지역난방, 주상복합)
3. 지원대상
 -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관리규약의 제·개정
 - 공동·구분관리 결정 등 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관련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4. 지원방법 : 대덕구청 건축과로 전자투표 보조금 신청 후 전자투표 실사에 따른 수수료 지원

◆ **지원내역(금액) / (K-Voting,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서비스)**

- 전자투표 세대당 550원 ~ 770원 (세대수에 따라 금액 변동)
- 현장투표소 지원내역
 - 현장지원 인원 : 2명 (44만원)
 - 현장지원 물품 : 터치스크린 모니터 2대, 노트북 1대, 투표용지발급프린트 등
- 이용아파트 준비사항
 - 준비사항 : 투표소 내 인터넷 환경구성(유선LAN 설치), 관리자용 테이블, 현장지원인력 테이블
 - 관할선거관리위원회 대여 : 기표대, 수기투표 병행시 투표 및 기표용구

※ 선관위에서 설치·운영하는 현장투표소 소요비용도 지원

5. 제출서류

전자투표
실시 전

- 지원신청서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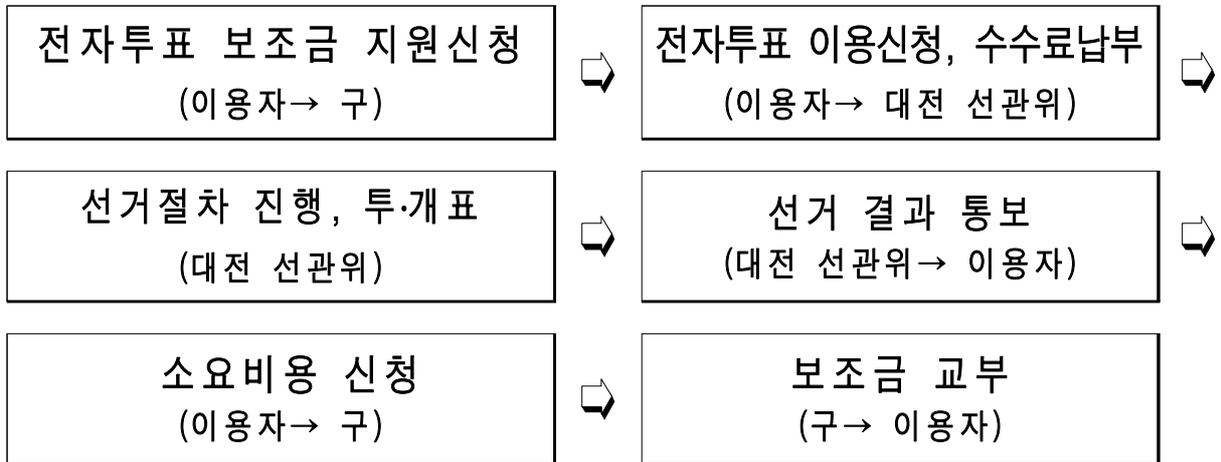
전자투표
실시 후

-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 선거관리위원회 전자투표 비용납부 영수증 사본 1부
-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1부

6. 지원결정의 취소 사항

- 기타 관계법령 규정 위반 등 보조금 지급에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

7. 지원절차 (K-Voting,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서비스)



※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명	전화번호	비 고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042-610-3900	서구 한밭대로 713(월평동)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	042-486-1390	서구 한밭대로 713(월평동)

8. 유의사항

- 접수된 신청서 등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건축과(☎ 608-41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식 2> 교부신청서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 (공동주택 선거관리 전자투표 서비스)				
공동주택 단지명				
주 소				
동 수		세대수		
선거명		선거일		
신 청 내 용				
구분	개 요	계	소요예산	지원금 결정액
1	전자투표 수수료			
2	현장투표소 소요비용			
	계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2021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전자투표 비용납부 영수증 사본 1부 2. 보조금 통장사본 1부				

공시송달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1년 2월 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고
3. 공고(의견제출) 기간 : 2021. 2. 5. ~ 2021. 2. 19.(14일간)
4. 기타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사전부과 대상자는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심한장애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감경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경우 재산이 압류(대체)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 대덕구청 사회복지과(☎042-608-680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1	(주)제이에스**	전라남도 여주시 여서1로 *9, *층(여서동)	59고****	2021-01-14 09:11:11	향군회관 지하주차장	2021.01.22	2021.01.26	수취인불명
2	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북로 46, 1**동 2**1호(법동, e편한세상)	24마****	2021-01-17 22:21	법동e편한세상 주차장	2021.01.25	2021.01.27	폐문부재
3	김**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167번길 37, 15**호(갈마동, 줄은하루2차)	46다****	2021-01-19 13:29:22	연축동 170-4	2021.01.25	2021.01.28	폐문부재
4	민**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로 123, 17**동 12**호(도안동, 도안리슈빌아파트)	275도****	2021-01-01 10:29:50	석봉동 309-10(신탄스타박스 dt)	2021.01.13	2021.01.20	폐문부재
5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암로 4*3-1(비래동)	12다****	2021-01-02 15:25:26	덕암동 12-1(자연애마트)	2021.01.13	2021.01.20	폐문부재
6	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34, 3**동 13**호(법동, 주공아파트)	36저****	2021-01-09 15:18:06	법동 283-1	2021.01.13	2021.01.20	폐문부재
7	정**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 *8	31다****	2021-01-09 21:34:16	송촌동 462	2021.01.13	2021.01.21	폐문부재
8	허**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55, 1**동 46**호(석봉동, 금강엑슬루타워)	27루****	2021-01-09 15:29:53	송촌동 534	2021.01.22	2021.01.26	폐문부재
9	박**	경기도 평택시 동부공원로 47, 2**동 8**호(비전동, 시대코아아파트)	360두****	2021-01-11 23:26:33	비래동 136-1	2021.01.22	2021.01.27	폐문부재
10	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42번길 88, 2**동 12**호(원내동, 진잠타운)	69누****	2021-01-13 06:46:47	신탄진동 220	2021.01.22	2025.01.25	수취인불명
11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북로 46, 1**동 13**호(법동, e편한세상)	94서****	2021-01-17 08:45:52	법동e편한세상 주차장	2021.01.25	2021.01.27	폐문부재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축물대장 말소내용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공시송달 방법 : 공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 2.공 고 기 간 : 2021. 2. 5. ~ 2021. 2. 20.(15일간)
- 3.공 고 장 소 : 대덕구청 공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 4.공시송달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말소					
다.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건축물대장말소)	위치	소유자	층수	구조/지붕	용도	면적
	읍내동 75-11	김종창	지상1층	세연와조/세멘와가	주택	77㎡
	읍내동 75-11	우강개발주식회사	지상1층	세연와조/세멘와가	주택	60.88㎡
	읍내동 75-6 번지외 1필지 (읍내동 75-8)	송인화, 김종창	지상1층	세멘부력	마을회관, 변소	108.1㎡
라.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사항

위 사항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덕구청 건축과(☎042-608-51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축과

○ 연 락 처 : 042)608-5145, 모사전송(FAX) 042)608-38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 문화진흥 사업 수행 및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개발을 통해 구민의 문화 활동 지원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재단의 설립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재단의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재단의 재산 및 정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재단의 임원, 이사회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재단의 사업연도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재단의 지도감독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 042-608-6572, FAX : 042-608-3823, E-mail : pbj1225@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문화관광체육과 담당자 박병진 (전화 : 042-608-65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 문화진흥 사업 수행 및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개발을 통해 구민의 문화 활동 지원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재단의 설립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재단의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다. 재단의 재산 및 정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라. 재단의 임원, 이사회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마. 재단의 사업연도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바. 재단의 지도·감독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 나. 예산조치: 예산확보 필요

다.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작성(붙임 참조)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 4) 성별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 5) 입법예고: 2021. 2. 5. ~ 2. 25 / 20일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은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등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법인격) 재단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관광 진흥 정책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지역문화·관광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4. 지역문화예술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문화시설의 운영·관리
6. 그 밖에 문화예술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내부규정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4.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고,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④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게 관한 사항
6. 이사회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종류, 임면, 임기,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사무를 관장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관계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보고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단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공유재산 사용·허가, 대부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

는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경과 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구 출연금

나. 관련조문

-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지역문화관광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관광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지방재정법」 제18조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의 추계는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실제 사업 추진 예상 규모를 반영하여 추계
- 문화시설 미운영(2021~2022년)과 시설 운영(2023~2025년) 구분하여 산정
 - * 2023년부터 대덕구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운영 예정
-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초기 비용(기본재산)은 1차연도에 계상

나. 추계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계
세 입	280	280	2,348	2,354	2,296	7,558
구 출 연 금	280	280	280	280	280	1,400
사 업 비			924	912	836	2,672
프로그램 운영수입 (청소년수련관)			736	746	755	2,237
공연장 대관수입 (청소년수련관)			59	60	61	180
위탁수수료 (대덕구청소년수련관)			349	356	364	1,069
세 출	280	280	2,348	2,354	2,296	7,558
인 건 비	178	228	875	886	897	3,064
운 영 경 비	12	12	549	556	563	1,692
사 업 비	40	40	924	912	836	2,752
기 본 재 산 적 립 금	50					50
운영비용(세입-세출)	0	0	0	0	0	0

다. 재원조달 방안 : 2021년 추가경정 예산 편성

(단위 : 백만원)

의존 재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소계		280	280	280	280
국 비 보 조 금		-	-	-	-	-
시 비 보 조 금		-	-	-	-	-
자 체 수 입 (지방세, 세외수입 등)		280	280	280	280	280

3. 작 성 자 : 자치행정국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구 분	통계목	주 요 내 용	예산액(원)
총 계			280,000,000
출연금	기본재산	○재단설립 허가시 필요한 경비	50,000,000
	자본금	○재산적립금 50,000,000원×1식	50,000,000
	인건비		178,000,000
	보 수	○상임이사 3,888,900원×1인×7월 (5급 13호봉)	27,222,300
		○팀장 2,718,700원×2인×7월 (6급 7호봉)	38,061,800
		○팀원 2,056,100원×3명×7월 (7급 3호봉)	43,178,100
		○퇴직급여충당금 15,494,600원×7월/12월	9,038,520
		○재단정원 사회보험	
		- 국민연금 15,494,600원×4.5%×7월	4,880,800
		- 건강보험 15,494,600원×3.335%×7월	3,617,220
		- 장기요양보험료 3,617,220원×5.125%×7월	1,297,680
		- 고용보험 15,494,600원×1.05%×7월	1,138,860
		- 산재보험(월평균보수×보험료율<7.93>/1,000)×7월	860,110
	○제수당	48,704,610	
	운영비		12,000,000
	일반운영비	○전산소모품 구입 500,000원×3회	1,500,000
		○위생용품 구입 250,000원×2회	500,000
		○사무용품 500,000원×2회	1,000,000
		○프로그램 운영 기자재 구입 200,000원×10회	2,000,000
	공공요금	○인터넷전화 107,500원×8개월	860,000
		○인터넷회선(3회선) 사용료 130,000원×8월	1,040,000
		○공공요금(전기, 수도) 450,000원×8월	3,600,000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0원×5인×10회	1,500,000
사업비		40,000,000	
지역문화관광 진흥정책	○지역문화정책공유사업 10,000,000원×1식	10,000,000	
지역대표 콘텐츠개발	○역사문화관광콘텐츠개발 10,000,000원×1식	10,000,000	
문화향유 여건마련	○생활문화사업 10,000,000원×1식	10,000,000	
구민참여형 거버넌스구축	○지역문화활동가양성 7,000,000원×1식	7,000,000	
	○참여형의사결정체계구축 3,000,000원×1식	3,000,000	

■ 지역문화진흥법

제5장 지역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등

제19조(지역문화관광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관광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관광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관광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지역문화관광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관광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지정·고시 등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3장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제1절 정관(定款)

제8조(정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출자·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절 임직원의 인사 등

제9조(임원) ①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2조(직원의 채용) ① 출자·출연 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출자·출연 기관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④ 출자·출연 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출자·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제3절 예산과 회계

제16조(회계연도) 출자·출연 기관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출자·출연 기관은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은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④ 출자·출연 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2년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⑤ 출자·출연 기관은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①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편성 등과 그 보고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재정 지원과 해산 등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절 지도·감독 등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6조(검사·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와 공시(公示) 등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에서 100분의 25 미만으로 변동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7조(「상법」과 「민법」의 준용)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자기관은 「상법」을 준용하고, 출연기관은 「민법」을 준용한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

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제29조제1항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제19호·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 확대할 수 있는 근거 조항과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긍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참전명예수당 지급 확대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3).

나. 보훈예우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4).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복지정책과

(전화 : 042-608-6764, FAX : 042-608-3832, E-mail : jyjy0311@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복지정책과 담당자 김준영
(전화 : 042-608-676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 중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을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르기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을”로, “월 2만원의”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보훈예우수당) 구청장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3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호,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4.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3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6조의3(참전명예수당)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u>제6조의3(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르기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u> <u>- 예산의 범위에서 -----</u> <u>-----.</u></p> <p><u>제6조의4(보훈예우수당) 구청장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u> <u>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호,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u> <u>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u> <u>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u>

[관 계 법 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적용 대상자) 참전유공자로서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등록신청 서류에 의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면 본인에게 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참전명예수당) ①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08. 16., 2017.8.11., 2018.4.20., 2019.2.15. >

②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참전유공자 월 7만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월 3만원 으로 한다.<개정 2010. 10. 01., 2018.4.20., 2020.8.14.>

③ 대전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대전지방보훈청장 등과 협조하여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13. 08. 16.>

④ 그 밖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에 따로 정한다.<개정 2013. 08. 16.>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월 3만원 으로 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제출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